

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51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체육단체, 학교 운동부 등의 체육시설 감면규정 신설 및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조례와 규칙에 각각 규정된 것을 조례에 통합하여 정비·관리하고
-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의 이용요금 차등적용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,
-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국민생활관 활용실태 반기별 점검 의무화 규정(안 제3조)

- 국민생활관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 의무화 명시

나. 일반주민과 단체의 체육시설 사용 동일한 순위로 규정(안 제6조)

-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 명시

다. 체육시설 사용료의 관외거주자 차등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- 관외거주자의 체육시설 사용시 안산시민 사용료의 50% 가산 적용

라. 체육단체, 학교 운동부 등의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및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각각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운영된 사항을 조례에 통합하여 정비하고, 국가 유공자 등 보훈관련 법령에 의한 예우대상자들의 감면근거를 명확하게 규정(안 제12조)

- 안산시체육회·안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·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신설
- 관내 학교 운동부 및 공공 스포츠클럽 선수들의 사용료 감면 신설
-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련 법령에 의한 예우대상자들의 감면근거 규정

- 병역명문가 및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신설

마.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금 요율 정비(안 제13조)

- 「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「별표 3의2」에 의거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이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중심의 반환 요율, 모호한 용어의 반환사유 등 정비

바.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제한규정 추가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 사용시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근거 마련 및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(안 제14조)

- 과도한 음주 · 취사행위,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
- 비록 사용허가를 받은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

사. 수탁자의 계약위반 시 일정기간 위탁참여 제한 근거 마련(안 제22조)

아. 부대시설 사용료의 시설명칭 수정(별표 1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 · 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- 「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22조
- 「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, 제21조의2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3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
- 「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16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입법예고 결과 : 붙임5

- 입법예고 : 2020. 9. 29.~ 10. 21. (22일간)

예고결과 : 의견있음(반영 1)

- 국민생활관 이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(반영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6**

- 방침결정문 : 붙임7**

< 불임 1 >

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민생활관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6호(종전의 제5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장애인, 장애인단체,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

6.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
(다만,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)

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민생활관의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거주자가 이용·사용할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)와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한다.

1. 전액 감면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(주관)하는 경기 또는 행사

나.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

2. 100분의 80 감면

가. 시를 연고로 하나,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(단,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)

나. 안산시체육회·안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

다. 경기도 및 시의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 및 경기

라. 관내 학교 운동부 및 공공 스포츠클럽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

3. 100분의 50 감면

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최(주관) 하는 교육 행사
- 나. 어린이, 청소년, 노인, 군인,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,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. 다만 연습사용료는 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별표 2를 준용한다.
- 다. 「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-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마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아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자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차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카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4. 100분의 30 감면

- 가. 체육진흥,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경기 또는 행사 중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의 개·폐회식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

- 1)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 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
- 2)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

- 나. 고유민속이나 대중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

- 다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전액”을 “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

중 “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” 을 “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사용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: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
나. 사용일 5일 전까지 : 전액반환

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상황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.

④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(반환신청일)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“조건” 을 “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조건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

5.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		체육진흥과
임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체육진흥과장 김 용 선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체육지원팀장 박 준 영
	담당자 성명 · 전화	김 동희 (행정 2107)

[별표 1]

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(제10조 관련)

○ 전용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分	사용목적	단 위	요 금		비 고
			평 일	토 · 공휴일	
체 육 관	체육경기 (1회 4시간이내)		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별표 1 준용		
	체육경기 이 외 (1회 4시간이내)				
공 연 장	공연, 발표 교육행사	1회 (4시간이내)	40,000	60,000	
소극장	공연, 발표 교육행사	1회 (4시간이내)	20,000	30,000	
테니스장	경기 (1회/2시간 이내)	주간	7,000	10,000	
		야간	10,000	14,000	
비고	1. 주간 : 06:00~18:00, 야간 : 18:00~22:00 2.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. 3. 공연연습 및 준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는 기준액의 50% 적용 (단, 냉·난방비 제외) 4.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. 5.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,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, 단체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및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함.				

○ 방 송 費

(단위 : 원)

종 류	구 分	중 계 방 송 費		비 고
		T · V	라 디 오	
프로 경기	국 내	10,000	5,000	
	국 제	30,000	10,000	
체육이외행사	국 내	30,000	15,000	
	국 제	30,000	15,000	
녹화 또는 녹음	공 통	생방송 중계료의 반액	생방송 중계료의 반액	
경기 또는 행사 촬영	공 통	TV의 생방송료와 동일	라디오 생방송료와 동일	

○ 상업사용료(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용료)

(단위 : 원)

구 분	금 액			비 고
1.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한 영화촬영 시	<input type="radio"/> 주 간 : 20,000 <input type="radio"/> 야 간 : 40,000			
2.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 한 선전광고 행위	<input type="radio"/> 1개 1일간 4,000 (단, 일출시부터 일몰까지)			
3.팸플릿 판매행위	<input type="radio"/> 총 판매금액의 20/100 정수			
4.기 타 (선전, 광고, 게시 등)	규 격	기 간	기 념 관	
	대형(20m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년간 동일 • 행사기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0,000 30,000 	
	중형(10m이상 ~20m미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년간 동일 • 행사기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0,000 20,000 	
	소형(10m미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년간 동일 • 행사기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0,000 10,000 	

○ 단체 및 개인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설명	사용일	어린이	청소년 · 군인	성 인	노 인	비 고
수영장	(개인) 1월 1일	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별표 2 준용				
	(단체) 1월 1일	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별표 2 준용				
헬스장	1월 1일	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별표 2 준용				
체육관	1인 2시간	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별표 2 준용				
테니스장	코트이용료 (2시간)	5,000				

[비고]

-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·문화·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.
- 관련법에 따른 세금 및 기금은 별도로 산정한다.
- 국민생활관 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, 「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- 수영장, 헬스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
단, 중복감면은 불가하다.
-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.
-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,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, 단체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및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함.

○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	단 위	사용료	비 고
무 대 조 명		시간당	20,000	
음향시설	음 향	1 회	20,000	
	녹 음			• 1회란 4시간 이내를 말함
	• 릴	1 회	30,000	•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
	• 카세트테이프	1 회	20,000	•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50%감면
야외앰프		1 회	10,000	
빔프로젝트		시간당	20,000	• 영화상영만을 위한 대관시 빔프로젝트사용료 면제
피아노	그 랜 드	1 회	20,000	• 음향사용시 기본제공 마이크수를 4대로 하고, 추가시 1대당 5,000원 부과
	일 반	1 회	10,000	
난 방		시간당	40,000	
냉 방		시간당	20,000	
전 광 판		시간당	5,000	
드 레 스		1 회	50,000	

< 불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설의 개방) ① ~ ④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	제3조(시설의 개방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국민생활관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제6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시장은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	제6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장애인, 장애인단체,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</u>
4. (생 략) <u>5. 체력단련 등의 연습사용</u>	<u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u> <u>6.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</u> <u>(다만,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)</u>
6. (생 략) ② (생 략) 제10조(사용료) ① ~ ③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사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민생활관의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거주자가 이용 · 사용할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.</u>
④ (생 략) 제12조(전용사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	<u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u> 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

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는 전용사용료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
료를 포함한다)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(주관)
하는 경기 또는 행사
2.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 또
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최(주관)하는 교육
행사
3. 체육진흥,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 규
모의 경기 또는 행사
 - 나.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후
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
경기
4. 고유민속이나 대중문화의 보급발전을
위한 행사
5. 어린이, 청소년, 노인, 군인, 장애인,
수급자,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
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
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
경기 또는 행사
6. 경기도 및 시의 대표선수로 선발되어
시(체육회) 및 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
단체 또는 개인
7. 시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
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
8. 시를 연고로 하니 시장이 구단주가 아
닌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
 - (단,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제
외)
9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
인정하는 경우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
사용료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
함한다)와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다만,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
용료 감면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한다.

1. 전액 감면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
(주관)하는 경기 또는 행사

나.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 연고
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구단
및 실업팀의 정식경기

2. 100분의 80 감면

가. 시를 연고로 하니, 시장이 구단주
가 아닌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
기

(단,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)

나. 안산시체육회 · 안산시장애인체육
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

- 또는 행사

다. 경기도 및 시의 대표선수로 출전하는
선수의 훈련 및 경기

라. 관내 학교 운동부 및 공공 스포츠
클럽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

3. 100분의 50 감면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
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최(주관)
하는 교육 행사

나. 어린이, 청소년, 노인, 군인, 장애
인 및 활동보조인 1인, 수급자에 해당
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
행사. 다만 연습사용료는 「안산시
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별표 2를
준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다. 「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마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아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자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차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카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4. 100분의 30 감면

- 가. 체육진흥,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경기 또는 행사 중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의 개·폐회식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
1)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

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

2)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

나. 고유민속이나 대중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

다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3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1.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.

가. 사용일 전일까지 : 사용료의 6할

나. 사용일 10일전까지 : 전액

2. (생 략)

3. 천재지변과 시설보수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

② 단체 또는 개인이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(관람)하고자 이 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요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이용(관람)개시일 이전 : 전액 반환

2. 이용(관람)개시일 이후 :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

제13조(사용료의 반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-----

-----.

가. 사용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: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
나. 사용일 5일 전까지 : 전액반환

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②-----

-----.

1.-----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---

2.-----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--

<신 설>

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상황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.

<신 설>

④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(반환신청일)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1. 사용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

2. · 3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라 처분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22조(위탁관리의 취소) (생 략)

제14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
또는 조건-----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4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

5.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

<삭 제>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위탁관리의 취소) ① (현행 제목 외

<신 설>

의 부분과 같음)

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
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
다.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
○ 단체 및 개인사용료							○ 단체 및 개인사용료						
(단위 : 원)							(단위 : 원)						
시설명	사용일	어린이	청소년 · 군인	성인	노인	비고	시설명	사용일	어린이	청소년 · 군인	성인	노인	비고
수영장	(개인) 1월 1일	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별표 2 준용					(개인) 1월 1일	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별표 2 준용					
	(단체) 1월 1일												
헬스장	1월 1일	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별표 2 준용					헬스장	1월 1일	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별표 2 준용				
체육관	1인 2시간	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별표 2 준용					체육관	1인 2시간	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별표 2 준용				
테니스장	코트이용료 (2시간)						테니스장	코트이용료 (2시간)					
		5,000							5,000				
[비고]							[비고]						
<p>1.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·문화·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.</p> <p>2. 관련법에 따른 세금 및 기금은 별도로 산정한다.</p> <p>3. 국민생활관 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, 「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4. 수영장, 헬스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단, 중복감면은 불가하다.</p> <p>5.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.</p> <p><u>< 신설 ></u></p>							<p>1.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·문화·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.</p> <p>2. 관련법에 따른 세금 및 기금은 별도로 산정한다.</p> <p>3. 국민생활관 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, 「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4. 수영장, 헬스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단, 중복감면은 불가하다.</p> <p>5.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.</p> <p>6.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,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, 단체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및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함.</p>						
○ 부대시설 사용료							○ 부대시설 사용료						
(단위 : 원)							(단위 : 원)						
시설명	단위	사용료	비고	시설명	단위	사용료	비고						
무대조명	시간당	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회란 4시간 이내를 말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50% 감면 영화상영만을 위한 대관시 <u>영사기료</u> 면제 음향시설 사용시 기본 제공 마이크수를 4대로 하고 추가시 1대당 5,000원 부과 	무대조명	시간당	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회란 4시간 이내를 말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50% 감면 영화상영만을 위한 대관시 <u>빔프로젝트 사용료</u> 면제 음향사용시 기본 제공 마이크수를 4대로 하고 추가시 1대당 5,000원 부과 						
음향 시설	음향	1회		20,000									
	녹음	1회		30,000									
	· 릴	1회		20,000									
	· 카세트테이프	1회		10,000									
야외앰프	1회	10,000											
영사기 (35m/m)	시간당	20,000											
피아노	그랜드	1회		20,000									
	일반	1회		10,000									
	난방	시간당		40,000									
냉방	시간당	20,000											
전광판	시간당	5,000											
드레스	1회	50,000											

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510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7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수정이유

-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자 중 관외거주자의 이용요금 차등 적용 등 시설사용 변경사항에 대해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고 자 함.

주요골자

- 시행 일자를 “2021년 4월 1일”로 수정 (부칙)

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 을 “2021년 4월 1일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〈신 설〉	부 칙 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</u> 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이 조례는 <u>2021년 4월 1</u> <u>일</u> 부터 시행한다.